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 3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개정이유

수도환경사업소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(2004.2.27)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84 → 895명 (증 11명)
- 집행기관 : 866명 → 877명 (증 11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비고
		4급	5급	6급	8급	9급	
계	11	1	1	1	3	5	
수도환경사업소	11	1	1	1	3	5	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884명”을 “895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866명”을 “877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 및 경과조치) 집행기관의 정원중 신도시건설 지원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,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84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66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<u>895명</u>----- ----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77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수도환경사업소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 (2004. 2. 27)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84 → 895명 (증 11명)
- 집행기관 : 866 → 877명 (증 11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*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비 고
		4급	5급	6급	8급	9급	
계	11	1	1	1	3	5	
수도환경사업소	11	1	1	1	3	5	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 및 상·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환경사업소 기구설치 및 정원 보강승인 신청이 지난 2004. 2. 27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금번 증원되는 정원은 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8급 3명, 9급 5명 등으로 총 11명 인력이 증가하게 됨.
- 금번 정원승인에 따라 파주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884명에서 895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866명에서 877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음.

【신규정원 승인내역】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비 고
		4급	5급	6급	8급	9급	
계	11	1	1	1	3	5	
수도환경사업소	11	1	1	1	3	5	

- 당초 우리 시에서는 상·하수도 및 환경 관련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환경사업소 내 4개과의 설치를 위해 총 45명의 정원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금번 최소한의 인력인 11명만이 승인되어 사업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력확충 노력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요구됨.

지방자치법

-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**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- 제21조 (정원의 규정)**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 2. 본청,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-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